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0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최기상・임미애・복기왕

박은정 • 박희승 • 강경숙

백승아 · 김성환 · 김정호

정태호 • 이병진 • 정성호

박상혁 · 김남희 · 박 정

김동아 · 남인순 · 김영환

이수진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중앙관서의 장(독립기관의 장 포함)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재정수지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이들기관에 대하여도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실정임.

하지만 헌법상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는 국회에서 확정한 헌법기관의 예산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배정요구서의 내용을 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개별사업을 검토해 배정예산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이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독립기관이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의 내용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다만,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한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 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재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			
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			
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			
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o</u>]		
<후단 신설>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		
	는 독립기관이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의 내용		
	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그대		
	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4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독립기관</u>		
	의 예산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		
	<u> 니하다.</u>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	⑤		
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 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서 신설>

<u>다만,</u>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한 배정계획을 조정하
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
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